



공보

2012년 10월 22일 금요일

식료품 반입을 관리하기 위한 한호 협력 체제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는 식료품 수입 업체들이 식품과 기타 다른 제품을 호주로 반입할 때 호주의 생물 안전에 필요한 규정을 이해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킬 목적으로 한국의 정부 직원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AFF는 호주의 정부 기관으로서, 외국의 유해한 동식물 또는 구제역 등의 질병이 호주에 가져 올 위험성을 포함하여 호주의 생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호주의 수입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DAFF는 호주로 반입되는 물품이 호주의 생물 안전에 위험한 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Tim Chapman 국경 준수국 제1차관보는 관련 업체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한국에서 들어오는 식료품들이 관련된 허가서나 신고 없이 반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Chapman차관보는 “호주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유해 동식물과 질병으로부터 호주의 농업과 관련 업종,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은 각별히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호주의 생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관련 업종, 즉 식료품 수입 및 소매 업체와의 협력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수입 허가서와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반입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물품은 해외로 재 반출되거나 처분, 또는 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됩니다.

“식료품이나 기타 다른 제품을 호주로 반입할 경우, 제품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반입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DAFF 공보팀 전화 + 61 02 6272 3232

“소매업체의 경우, 해당 제품이 호주의 반입 규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공급업체에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이 합법적으로 반입되었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소매업체는 그 제품을 비축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DAFF는 1908년 검역법에 따라 소매점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회수할 권한이 있으며, 수입 또는 소매 업체가 불법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벌금과 징역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물품이 호주로 반입된 것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Biosecurity Redline 전화 1800 803 006번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DAFF 웹사이트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DAFF 연락처 목록과 호주로의 식료품 반입과 관련한 현황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daff.gov.au/aqis/import/food/importing-korean-food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FF 공보팀 전화 + 61 02 9123 4567

T +61 02 9123 4567
E media@daff.gov.au

18 Marcus Clarke Street
Canberra City ACT 2601

GPO Box 858
Canberra City ACT 2601

daff.gov.au